C - 83 - 2013

- (1)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각 세부공정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등급에 따른 관리대상 공정을 정하여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공사현장의 제반여건과 설계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작업단계별 작업방법이 부합하고 공사용 장비 적용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후 구체적인 작업계 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작업계획서는 본 공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자가 수립하여야 한다.
- (4) 기 제작된 PCT거더 구성부재, 추진코(Nose) 및 강제 거푸집 등은 반입해서 사용하기 전에 구조 전문가가 구조적 안전성 및 부재의 결함·손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크레인을 사용하여 장비의 반입·반출, 부재의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 및 순서 등이 포함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.

6. 시공전 공통 안전사항

- (1) PCT 거더교의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내용 및 계약서의 내용, 교량설계도 및 설계서의 내용, 공사시방서의 내용 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준비를 하여야 하고 설계도서의 시공순서를 준수하여야 한다. 다만, 현장여건과 일치하지 않아 설계를 변경할 경우 관련 구조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시공단계별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.
- (2) 강재의 규격 및 수량, 품질확인, 조달방법 및 인수장소, 사전조사 등 제작공사에 준비할 사항을 계획하여 관리감독자 및 감리자에게 제출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.
- (3) 교량제작을 함에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기 위해 시공계획서 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사항과 같은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 - (가) 강재 생산공장 및 제작공장 위치
 - (나) 강재 인수장소 및 제작공장까지 운송수단, 운송로
 - (다) 강재인수 후 보관장소